

## 소속변경시행세칙

제정 2014. 9. 1

개정 2017. 4.19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을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(전과)(이하 “소속변경”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소속변경이라 함은 입학한 학과(부)의 전공(이하 “제1전공”이라 한다)에서 다른 전공(이하 “제2전공”이라 한다)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.

**제3조(자격)** 학칙 제31조에 따라 본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, 제1전공 1학년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시 모두 이수하고, 성적 평점 평균이 2.0 이상이며, 등록 학기 수가 6학기(유급학기 제외)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허용범위)** ①모든 학과(부)는 동일 캠퍼스 내에서 소속변경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소속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.

1. 의과대학 의학과(의예과)로의 진출입
2. 간호대학 간호학과로의 진출입
3. 소속변경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소속변경
4.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안경광학과, 응급구조학과 및 바이오융합대학 유아교육학과로의 소속변경 (개정 2017.4.19)

②본교의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공학과, 미용화장품과학과, 의료경영학과, 중독재활복지학과, 장례지도학과, 스포츠아웃도어학과, 식품영양학과, 식품산업외식학과, 보건환경안전학과, 의료IT학과, 의료홍보디자인학과, 아동학과로의 소속변경은 결원인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10%로 허용한다. (개정 2017.4.19)

③소속변경의 모집대상 학년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17.4.19)

**제5조(신청 및 허가)** ①소속변경 희망자는 신청 직전학기 기말고사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학업계획서를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과(부)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소속변경 대상자의 선발은 제1전공 교과성적 상위자를 우선으로 하되, 학과별 별도 선발기준(서류심사, 면접심사 등)을 둘 수 있다.

③소속변경하는 대학의 학장은 소속변경 대상자가 선발되면 교무처에 제출하고, 이를 총장에게 제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이수과정)**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과(부)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 이수로 인한 재학연한은 연장될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하되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소속변경(전과) 지원서

캠퍼스명	대전 / 성남	소속학과명	
학 번		성 명	
주민등록번호		연 락 처	
주 소			
소속변경 지원학과	학과		

본인은 학칙 제18조 및 소속변경(전과) 시행세칙에 따라 소속변경을 하고자 지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제1전공 현황

총 이수학기	학년도 학기
총 취득학점	학점
평 점 평 균	/ 4.5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첨 부 : 학업계획서 1부.

위 사실을 확인하여 소속변경 지원을 승인함.

제1전공 학과장 \_\_\_\_\_(인)

제2전공 학과장 \_\_\_\_\_(인)

을지대학교 총장 귀하

학 업 계 획 서(소속변경학과)	
지원동기	
관심분야 (또는 과목)	
학업계획 (구체적으로)	
기타	

\_\_\_\_\_ 학과 성명 : \_\_\_\_\_ (인)

을지대학교 총장 귀하